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I.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 64억 2,500만원, 실제수납액 39억 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6%를 징수함.

(단위: 백만원)

Ŧ	구 분	예산현액1)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²⁾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881	6,425	3,958	61,6	874	1,593
일	반 회 계	881	6,425	3,958	61.6	874	1,593

□ 세출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405억 7,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5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5억 9,100만원임.

(단위: 백만원)

7	분	예산현액 ³⁾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	계	40,571	35,326	3,655	1,591 (3.9
일	반 회 계	34,699	30,494	2,742	1,463 (4.2
특	별 회 계	5,872	4,832	912	128 (2.1
도	시 개 발	5,872	4,832	912	128 (2.1

¹⁾ 예산액과 예산현액 동일(전년도 이월액 없음)

²⁾ 징수율(%) =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

³⁾ 일반회계 예산현액(34.699) = 예산액(28.504) +전년도이월액(5.995) +예비비사용액(200)

Ⅱ.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64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8억 7,400만원, 미수 납액은 15억 9.300만원임⁴).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881	6,425	3,958	61.6	874	1,593
경상적세외수입	_	50	50	100	_	_
임시적세외수입	134	5,628	3,162	56.2	874	1,593
국고보조금등	747	747	747	100	1	_

○ 세입은 주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과태료 및 각종 시·도비반 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881	6,425	3,958	61.6	874	1,593
경상적세외수입	_	50	50	100	_	-
기타수수료	_	16	16	100	_	-
기타이자수입	_	34	34	100	_	_
임시적세외수입	134	5,628	3,162	56.2	874	1,593
일반부담금	-	2,631	2,631	100	_	_
과태료	90	64	47	73.4	_	17
시 도비 반환금수입	44	360	353	98.0	_	7
그외수입	_	121	121	100	_	-
지난연도수입	-	2,452	9	0.4	874	1,569
국고보조금등	747	747	747	100	_	-
국고보조금	747	747	747	100	_	_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5,872)=예산액(5,360)+전년도이월액(512)

^{4) &#}x27;18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하여 그 명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으로 변경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을 '미수납 액'으로 변경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346억 9,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04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불용률)	
일반회계	28,504	34,699	32,127	30,494	2,742(7.9%)	1,463 (4.2%)	
사업비	27,949	34,144	31,608	29,975	2,742 (8.0%)	1,426 (4.2%)	
재무활동	1	1	1	1	_		
행정운영경비	554	554	518	518	_	36 (6.5%)	

□ 세출예산 집행 관련

가. 이용·이체·전용·변경

- 예산 이용, 이체, 전용은 없음
- 예산변경은 총 4건, 6,300만원임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현(전산개발비)
 → 지가조사(사무관리비)
 -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타보상금) 1,000만원
 -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시설비 → 감리비)
 2.771만원
 -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사무관리비)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사무관리비)
 500만원

나. 예비비지출

- 예비비지출은 총 1건, 2억원임
 -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공공운영비) 2억원

다.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3건, 9억 8,000만원임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사무관리비)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시설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시설비) 	1억 9,000만원 3억 8,000만원 4억 1,000만원
○ 사고이월은 총 11건, 17억 6,200만원임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사무관리비) 	6,142만원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연구용역비) 	1억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전산개발비) 	4억 1,300만원
 용도지역 재정비(연구용역비) 	2억 5,873만원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1억 4,138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7,100만원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시설비) 	1억 3,000만원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시설비)	1억 2,057만원
■ 글로벌 신성장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마련 (시설비)	1억 3,100만원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시설비) 	1억 887만원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용역비) 	2억 2,650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라. 집행잔액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의 4.2%인 14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7,000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790만원

지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11억 7,505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없음

□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억 7천2백만원으로, 이 중 48억 3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2천8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년도이월액	불 용 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5,360	5,872	5,739	4,832	912(15.5%)	128(2.1%)
사업비	5,360	5,872	5,739	4,832	912(15.5%)	128(2.1%)

□ 세출예산 집행 관련

가. 이용·이체·전용·변경

○ 없음

나. 예비비지출

○ 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은 총 4건, 9억 1,218만원임
 -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설비)

1억 4,760만원

• 오류동 동부제강부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시설비) 1억 2.288만원

•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설비) 3억 2,962만원

■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설비) 3억 1.206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라. 집행잔액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의 2.1%인 1억 2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출잔액(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1억 2,762만원

Ⅲ.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

○ 세입결산

-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 64억 2,500만원, 실제수납액 39억 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6%를 수납함. 불납결손액은 8억 7천4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9천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_	-1 731	OI TI OII	전년도	에서들이	징 수		수납액		봛		피스오
호	1 계	예산액	이월액	예산현액	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881	-	881	6,425	5,908	1,950	3,958	874	1,593	61.6%
일년	반회계	881	-	881	6,425	5,908	1,950	3,958	874	1,593	61.6%

	예산 과목	세입 부서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7	4	881	6,425	5,908	1,950	3,958	874	1,593	
경 상	/타 수 료	도시빛 정책과	-	16	16	-	16	-	-	· 지유표시구역내 옥외광고물 3건 허기수수료
적 세	기타	도 시 계획과	_	9	9	-	9	-	-	· 2017년 공항고도제한완화세미나개최 관련 보조금 발생이자 · 관악 사통팔달 도시발전계획 집행잔액 발생이자
외 수	判	시 설 계획과	-	21	21	-	21	ı	-	·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비 자치구 보조금 통장 발생이자
수 입	수입	도시빛 정책과	-	5	4	-	4	-	1	·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휘도측정장비 구매 이자 ·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설치 발생이자
	일반 부담 금	시 설 계획과	-	2,631	4,581	1,950	2,631	-	-	·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징수 및 건축주 환급금
	과태 료	토 지 관리과	90	64	47	I	47	-	17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 공인중개 시법 위반 과태료
		도 시 계획과	_	26	26	_	26	-	_	· 2017년 공항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집행잔액 · 관악 시통팔달 도시발전계획 보조금 집행잔액
	시· 도비 반환	도 시 관리과	44	82	82	-	82	-	-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잔액 · 숭인동·명륜동 경관사업 약정분담비율 초과 집행 금액회수 · 강동구청앞 디자인서울거리2차 지중화공사비 강동구 금융비용 반환금 등
임 시	금수 입	시 설 계획과	-	124	124	-	124	-	-	·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비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적 세		도시빛 정책과	1	128	121	_	121	-	7	·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휘도측정장비 구매 잔액 ·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설치 집행잔액 등
외 수	그외	시 설 계획과	-	120	120	-	120	-	_	· 세대분리미신고에 의한 가족수당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자치구 반납금
입	수입	토 지 관리과	-	1	1	-	1	ı	-	·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도 시 계획과	-	1	0	-	0	-	1	· 서울행정법원 2007아1830 소송비용액확정 · 서울행정법원 2007아2365 소송비용액확정
		도 시 관리과	_	31	_	I	_	7	24	·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취소소송비 회수 · 서울행정법원 2004카기10025 소송비용 등
	지난 연도 수입	시 설 계획과	-	2,310	-	-	-	855	1,455	· 서울행정법원 2009이3184 소송비용액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0이1523 소송비용액확정 ·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지난연도 이월액
	ТЫ	토 지 관리과	_	110	9	-	9	12	89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도시빛 정책과	_	-	_	_	_	-	-	·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 집행잔액(2,000원)
국 고 보	국 고 보	도 시 계획과	200	200	200	-	200	_	-	·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뇽	보조 금	토 지 관리과	547	547	547	-	547	-	-	· 국토부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및 지가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 도시계획국의 세입은 주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 되며, '18년 국고보조금은 지가조사 등 4개 사업에 해당되고, 기반 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에 따른 재산정 부과금과 환급 액, 그리고, 그 동안 누적된 미수납액인 지난연도수입으로 징수됨.

(18년도 국고보조금 세출사업 결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예산현액) 수령액		이월액	집행 잔액
		(X746,871) 1,366,871	(X746,871) 1,366,871	(X746,871) 883,859	(X0) 413,000	(X0) 70,012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 경 구축	전산개발비	(X200,000) 800,000	(X200,000) 800,000	(X200,000) 317,000	(X0) 413,000	(X0) 70,000
지가조사	사무관리비	(X15,000) 35,000	(X15,000) 35,000	(X15,000) 34,988	1	(X0) 12
시기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452,809) 452,809	(X452,809) 452,809	(X452,809) 452,809	-	-
지적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9,062) 19,062	(X19,062) 19,062	(X19,062) 19,062	_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자치단체 자본보조	(X60,000) 60,000	(X60,000) 60,000	(X60,000) 60,000	-	-

-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 즉, 세수추계 차가 55억원이 넘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간에는 약 2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세수추계 차는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하여 일반부담금·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는 지난연도수입에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그리고, 일반부담금의 환급액 발생에 기인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	미수납금	내 역
기반 시설 부담	일반 부담금	-	2,631,307	2,631,307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 4,580,876천원 -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재산정 부과 징수(관악)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 △1,949,569천원 - 사업시행변경 등으로 건축주에게 환급(성동,도봉)
구급 금 관련	그외수입	-	120,328	120,328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건축 설계변경) 발생으로 시에서 우선 환급 후 자치구에서 반납받은 금액(마포,용산)
	지난연도 수입	_	2,307,091		853,472	1,453,619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지난연도 이월액

-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법률의 제정 및 폐지에⁵⁾ 따라 약 2년 간('06. 7. ~ '08. 3.) 부과되었고, 부과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징수 또는 확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한 세입과목은 일반부담금과 그외수입, 지난연 도수입으로서, '18년 일반부담금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 징수한 사항(관악구, 45억 8천1백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6)(성동구, 1,652백만원) 및 쌍문제일종합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라 재산정에 따른 환급 및 부담금7) 납부에 따른 공제(도봉구, 297백만원) 사항임.

그외수입은,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을 서울시에서 우선 환급해 주고 이후 자치구에서(마포구, 용산구) 서울시에 반납한 사항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이월액인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는, 서울 서부 중앙시장 정비사업 조합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8 억 5천3백만원)의 시효소멸(5년)에 따라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6 건, 14억 5천4백만원)는 계속 미수납되었음.

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06.1.. 시행 '06.7.) 및 폐지('08.3.)

⁻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

⁻ 배분비율 : 국고 30%, 지차제 70%(서울시 49%, 자치구 21%)

⁶⁾ 건물(갤러리아포레) 신축으로 부과한 교통개선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의 공제 대상이라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 반시설부담금을 확급함

⁷⁾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자치구	위치	부과일자	금액	미수납 사유
		총계	1,453,619,100	
종로구	평창동	2007.2.13	8,979,250	재산 압류(차량) ⇒ 차량 외 무재산
강서구	등촌동	2007. 4. 5	77,481,250	압류→경매중→후순위 ⇒ 징수실익 없어 불납결손 검토
관악구	봉천동	2007.12.27	922,098,310	시공사 및 신탁사 부도, 재산압류(차량) ⇒ 징수실익 없어 불납결손 검토
	역삼동	2007.10.22	382,955,380	한국토지신탁 매각, 후순위 ⇒ 징수실익 없어 불납결손 검토
강남구	삼성동	2008.1.21	9,577,820	체납자 토지 압류 중이나, 선순위 채권자 많음 ⇒ 징수실익 없어 불납결손 검토
	삼성동	2008.2.26	52,527,090	경매절차 진행, 후순위 ⇒ 징수실익 없어 불납결손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미수납금은(6건, 14억 5천4백만원) 건축주의 자금 능력 부족, 압류·경매 진행 등으로 징수 장기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수납건에 대해서 압류·경매 등 진행상황과 재산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수납을 촉구하는 한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건은 불납 결손처리하여 회계의 실질적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최근 3년 도시계획국의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세입과 징수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 '18년도 세입 증가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고, '16년대비 '17년 세입 증가는 디자인서울거리(2차)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 정산반화금 수납 예산액으로 기인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 수 8) 결정액		비스국제		수납액		비녀스		
연도			세수추계 차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 납액	<u>불납결손</u> 액	미수납액	징수율
′ 1 8	881	6,425	5,544	5,908	1,950	3,958	874	1,593	62%
′ 1 7	550	3,287	2,737	937	-	937	_	2,350	29%
′ 1 6	92	4,264	4,172	1,029	678	351	_	3,913	8%

- O 세출결산(회계별 집행현황 붙임1)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05억 7천1백만원으로.

(단위:백만원)

		저네	WITE	TIZONI		다음(연도 0	월액	지체	불용률	
회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행위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	
합 계	33,864	6,507	40,571	37,865	35,326	3,655	980	2,675	1,591	3.9	
일 반 회 계	28,504	5,995	34,699	32,127	30,494	2,742	980	1,762	1,463	4.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5,360	512	5,872	5,738	4,832	912	-	912	128	2.1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6억 9천9백만원이며, 이 중 321억 2천 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4억 9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27억 4천 2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6천3백만원을 불용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불용률)
일반회계	34,699	32,127	30,494	2,742(7.9%)	1,463 (4.2%)
사업비	34,144	31,609	29,975	2,742(8.0%)	1,426 (4.2%)
재무활동9)	1	1	1	_	
행정운영경비	554	518	518	_	36 (6.5%)

⁸⁾ 최근 3년 예산액과 예산현액 동일

^{9) &#}x27;18년 재무활동(국고보조금 반납) : 776,600원

⁻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584.440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92.160원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로서 재정 운용이 보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서울시 평균 이월률(평균 이월률 : 3.1%,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 : 0.8%)과 불용률(서울시 평균 불용률 : 2.8%,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 2.1%)을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높다 할 수는 없으므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집행력 제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다음년도이월액	불 용 액	불용률(%)
2018	34,699	30,494	87.9	2,742 (7.9%)	1,463	4.2
2017	29,093	21,621	74.3	5,995 (20.6%)	1,477	5.1
2016	18,236	12,336	67.6	4,887 (26.8%)	1,013	5.6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 7천2백만원으로, 이 중 57억 3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8억 3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 1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예산현액 대비 15.5%),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 2천8백만원을 불용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년도이월액	불 용 액
도시개발특별회계	5,872	5,738	4,832	912(15.5%)	128(2.1%)
사업비	5,872	5,738	4,832	912(15.5%)	128 (2.1%)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월률 증가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18년에는 전년 대비 이월률이 급증(9.1%→15.5%)하였음. 이는 공동주택단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지연에 주로 기인한다 하겠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18	5,872	5,738	4,832	912 (15.5%)	128	2.1
2017	5,653	5,588	5,076	512 (9.1%)	65	1.1
2016	4,381	4,260	3,982	278 (6.3%)	121	2.8

2.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첫째,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 이용, 이체, 전용은 없음

▶ 예산의 변경

○ 예산 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6천3백만원이 발생함.

(단위: 백만원)

구분	베타지어	트게모	예산액	변경	금액	사 유
丁正	세부사업	통계목	에선택	감액	증액	^ι π
	계		2,067	63	63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구현	207-02 전산개발비	300	20	_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조사
	지가조사	201-01 사무관리비	15	1	20	용역을 위해 2천만원 변경 증액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62	10	-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수거보상금 지급
일반 회계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_	1	10	* 순증된 예산현액 1천만원 중 9만2천원만 집행
7/11	장안교 경관 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400	28	-	· 감리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일부 변경 사용
	정한파 성단 조정 될지	401-02 감리비	_	ı	28	김니미 구국에 따는 시골미 글구 변경 사용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	5	_	LUCI 통번역비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사용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0	_	5	

○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 반 운영'은 수거보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비인 자치단체경상 보조금과(서울시:자치구=60:40)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동반 용역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는데, 불법공공현수막을 수거할 경 우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함('18.3.)10).

불법현수막은 상업용 뿐 아니라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정당·단체 등이 불법으로 내붙이는 공공용도 있으나, 구청이 채용하는 수거보 상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 등으로 공공용 현수막 수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18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 구청장에게만 주어졌던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이 시장에게도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기타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서울시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기타보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단 1건(9만2천원, 46개 불법공 공목적광고물 수거, '18. 9. 20. 지급)¹¹⁾ 뿐으로 예산 변경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19년 예산에도 기타보상금은 편성되지 않았음. 이 는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수거보상원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보상금 지급 주체를 막론하고 공공 용 현수막 정비를 기피하는 결과로 보여짐.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동정비반 정비실적과 자치구의 수거보상실적을 비교해 보면, 기동정비반의 경우, 공공용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이 장업용 현수막이 공공용보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	② <u>시장·구청장</u>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¹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18.3.) 불법현수막 등의 수거 보상금 지급권한을 구청장 뿐 아니라 시장에게도 부여함

¹¹⁾ 지급대상은 '18년 당시 노원구 수거보상원이었으나, 자치구에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보상을 꺼려해 서울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다 월등히 많이 수거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현황과 한계를 고려하고, 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주체들이 불법현수막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다면, 예산 편성시 기동정비반 운영비(사무관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최근 2년 기동정비반 정비실적(자료: 도시빛정책과)〉

(단위 : 건)

	계		상업용			
Al		소계	행정	정당	단체등	<u>(१ म २</u>
2017	7,600	5,382	2,833	810	1,739	2,218
2018	6,483	4,832	1,422	1,379	2,031	1,651

〈최근 2년 수거보상제 실적(자료: 도시빌정책과)〉

(단위: 건, 천원)

	계 (현수막+벽보)				벽보					
구분			계		상업용		공공용		7.1-	
	매수	지급액	매수	지급액	매수	지급액	매수	지급액	매수	지급액
2017	23,153,103	1,872,985	484,922	861,099	481,489	850,630	3,433	10,469	22,668,181	1,011,886
2018	27,383,855	1,823,365	345,032	661,276	339,199	645,113	5,833	16,163	27,038,823	1,162,089

둘째,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명시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9억 8천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5건, 26억 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건에 17억 6천2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에 9억 1천2백만원임.

○ **명시이월은**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과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사업에서 발생하였고,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은 사업비 전부를 명시이월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시유
			7,072	980	13.9	
일 반 회 계	용산공원 디자인 랩 운영 및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420	190	45.2	용산기지 캠프킴 부지내 USO 건물(용산 공원 갤러리 '18.11월 임시 개관)에 대한 주한미군과의 사용 협약 지연으로 연내 유 지관리 용역 발주 곤란하므로 명시이월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시설비	380	380	100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역 지하통 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계획'과 연계하 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국토부 용역의 준 공기한 연장(2018.7월 → 10월)으로 국 토부-서울시 공동추진 예정인 해당 용역의 연내 발주 곤란하여 이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설비	6,272	410	6.5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관협정 사업으로서 민간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참 여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대 상지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옥상녹화 공 사비 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1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안이고, 지방재정법(제4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¹³⁾ 상임위원회의 예비심 사를 거쳐야 함에도,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은 '18년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명시이월 목록에 누락되었고 우리위 원회 예비심사도 받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시이월이 발

¹²⁾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¹³⁾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되어 의결되었음.

용산공원 디자인랩은 시민소통공간으로서 용산공원 전쟁기념관 일부 공간을 대관·사용하다가('17.12.~'18.5.) 현재는 용산기지 캠프킴 부지내 USO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18.11. 임시 개관), 용산기지로의 이전 과정에서 주한미군과의 사용 협약이 지연되어¹⁴⁾ 리모델링 사업비(유지 관리용역 명목으로 사무관리비 편성)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파악됨.

주한미군과의 MOU 체결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그불가피성은 이해되나, 주한미군과 보다 긴밀하게 사전 협의, 동향 파악이 되었다면 명시이월 추진 여부가 좀 더 신속히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현황 및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은 명시이월 15)과 사고이월 16)이 모두 발생하였으나('18년 사업대상지별 결산, 붙임 2). 전년 대비 이월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불용률도 낮아짐.

(단위:천원)

		_,	다	다음연도 이월액				이원류	불용률
연도	예산현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명시이월 사고		집행잔액	집행률 (%)	(%)	(%)
2018	6,295,565	5,495,488	530,569	410,000	120,569	269,508	87.3	8.4	4.3
2017	7,767,017	2,588,189	4,721,565	450,000	4,271,565	457,263	33.3	60.8	5.9
2016	4,613,537	968,296	3,456,517	1,980,632	1,475,885	188,724	21.0	74.9	4.1

¹⁴⁾ 서울시의 미군건물 사용 전례가 없어 미군 측의 법리적 검토가 장시간 소요됨('19.4. MOU 체결)

¹⁵⁾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4억 1천만원 이월

¹⁶⁾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 설계비 중 1천 890만원과, 광진구 화양동 건대 입구역 주변 공사비 중 1억 2백만원 이월

이는 '18년부터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여 1차년도는 설계비, 2 차년도는 공사비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적 공정을 반영한 예산 편성 결과라고 보여지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장되는 예산을 축소시킨 바람직 한 사례라고 사료됨.

사고이월의 경우, 주로 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국의 사업 성격상 사전절차 및 계약 지연, 과업범위 추가 및 기간 연장 등에 따라용역 준공기한이 늦어짐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해 온 가운데,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의 이월규모 감소로사고이월률이 급감한(19.1%→5.1%)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의 기간 연장 등으로사고이월률이 급증함(9.1%→15.5%).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	예산	사고 이월	이월	계약	사업	기간	사고이월사유	현황 ('19.
군		목	현액	액	률	일	당초	변경		5.)
	계		8,843	1,762	19.9					
	2018 도시정책	사 무 관 리	140	61	43.6	['] 18.7.	'18.7. ~ '18.12	'18.7. ~ '19.3.	° 7월말 발주되었으며, 운영계획상 4가지 영역(수도권미래발전포럼, 국 제 포럼, 시민 도시아카데미, 아이 디어 공모전) 중 3가지 영역은	('19.
일 반	컨퍼런스 운영	비	140	01	43.0	27.	취법에	간 연장 카 없음	'18.12. 완료 °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도시아카 데미 수료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충 분한 공모기간 부여를 위해 이월	正O
계	서울 도시기본계 획 상시 모니터 링체계 운영	연 용 비	238	100	42.0	'17.6. 6		'17.6. ~ '18.11. 간 연장 카 없음	장기계속 용역으로 1차년도 과업기 간내 대공기부족(103일)으로 사고 이월 후 2차년도 용역과 동시 집행 하고자 함	준공
	도시계획정보시 스템 웹기반 업 무포털 환경 구 축	전 산 개 발 비	800	413	51.6	'18.5. 25.		'18.5. ~ '19.2 간 연장 카 없음	사용자 교육 의견수렴 및 연계시스 템 구축시기를 고려한 연계처리 등 추가요청사항 반영하여 과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함.	준공

구	세부사업	통계	예산	사고 이월	이월	계약	사업	기간	사고이월사유	현황 ('19.
분	"" ""	목	현액	액	률	일	당초	변경		5.)
	용도지역 재정비	연 구 용 역 비	259	259	100	'17.4. 1.		'17.4. ~ '19.2. 간 연장 카 없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후속 정 책추진(조례개정) 검토 지원 등 추 가과업 이행으로 용역 준공기한 연 장	준공
	도시공간정책 차 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 반 마련	연 구 용 역 비	150	141	94.0	'18.3. 30.	'18.3. ~ '18.12 과압기	18.3. ~ '19.3. 간 연장 카 없음	유관용역인 서울주거종합계획(연장 예정) 수급정책 및 물량 연계 검토 를 통한 해당 과제 결과물 검토 및 협의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이월	준공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 스템 구축	전 산 개 발 비	148	71	48.0	'18.5. 30.	'18.5. ~ '19.3.		2019년 3월 준공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하여 이월	준공
	집단취락지구 종 합관리방안 수립	시 설 비	130	130	100	-	'19.5. ~ '20.10.		추경예산으로 긴급공고(협상에 의한 계약)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예 정으로 용역발주기간, 심사 및 원인 행위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고자 함	현재 용역 공고중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 설 비	6,272	121	1.9	'18.9. 20. 등	화동 '18.1. ~ '18.12 상수동 '18.1.	화동 '18.1. ~ '19.4. 상수동 '18.1.	공사추진 중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 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관협정사업 추진대상 민간건축물 소유자 참여신 청 저조로 용역발주 지연	화용: 준공 상수동 :
							~ '18.11.	~ '19.6.	0 VITT 0 12 1 VIC	미준공
	글로벌 신성장거 점의 관문 김포 공항 육성·관리 방안 마련	시 설 비	275	131	47.6	'18.4. 19.		'18.4.	'18년 2월 용역 발주 및 4월 계약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용역 준공기 한 미도래 및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	미준공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시 설 비	192	109	56.8	'18.4. 12.		'18.4. ~ '19.7. 간 연장 카 없음	'18년 2월 용역 발주 및 4월 계약·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용역 준공기 한 미도래 및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	미준공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 른 가이드라인 연 구	연 구 용 역 비	240	227	94.6	'18.2. 12.		'18.2 ~ '19.7. 간 연장 가 없음	용역사업의 법적근거인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17년말 발 의되었으나 국회 논의지연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아 준공기간을 연장하 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미준공
도	계		1,630	912	56.0					
_ 시 개 발 특	개포 택지개발지 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설 비	250	148	59.2	'18.1. 1.		'18.2 ~ '19.3 간 연장 카 없음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소통과 포용하는 주거지로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기관 협의 등 절차이행을위해 추가 과업기간 필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미준공

구 분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 액	이월 률	계약 일	사업 당초	기간 변경	사고이월사유	현황 ('19. 5.)
				<u> </u>			92	변경_	재정비(부분)용역 준공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해당 계획에 대한 교통영 항평가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	5.)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일대 마스 터플랜 수립	시 설 비	167	123	73.7	'18.1. 2.	'18.1. ~ '19.1. 과업가, 사업바芹	'18.1. ~ '19.7. 간 연장 카 없음	2019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관련 법 령을 반영하고, 주요부지에 대한 추 기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기간 변경 에 따라 관련 예산 사고이월	미준공
별 회 계	반포·서초·여의 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	시 설	758	330	43.5	'18.3. 7.	'18.6. ~ '18.12	'18.6. ~ '19.6.	°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기준과 향후, 아파트지구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기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 다 양한 이슈 검토로 용역기간 연장	미준공
	립	'				, ,	과업기간 연장 사업비추가 없음		° 반포서초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 위계획 용역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 가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이월	
	서빙고·잠실 아 파트지구 지구단 위계획 수립	시 설 비	455	312	68.6	'18.8. 16.	'18.8. ~ '19.2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기간 연장	1차 용역 준공

○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주로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사항은 없음. 해당 사항 중 일부는 과업내용의 보완 등을 위한 기간 연장으로 보여지나, 또 한편으로는 '19년 제도 개정을 역두에 두고 '18년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서울시의 정책결정·계획발표 등이 지연되어 용역 준공을 연기하는 등 서울시 편의적 용역 운영행태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사료됨.

'17년 초 우리위원회의 용역사업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도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정 편의적 용역 운영은 용역기관·업체들이 서울시 용역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므로, 면밀한 사전기획을 통해서 용역계약 변경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변동성, 정책적 변동성에 따른 사안은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용역기관·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

겠으며,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용역비 추가가 필요하다 사료됨.

- 사고이월이 발생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해 왔고,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함.
-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은 매년 기본계획 성과 및 추진과정 등을 진단하는 용역으로(서울연구원 수행), 이 사업이 시작된 '14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해 왔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이월액		레포트 발간	
2014	200,000	200,000	182,600	'14	2015.04	
2015 17)	0	182,600	_		-	
2016	150,000	150,000	137,000	'16	2017.06	
2017	150,000	287,000	137,500	'17	7.06.05 ~ '18.11.15	2018.11
2018	100,000	237,500	100,000	총차 '18.09.19 ~	1차 '18.09.19 ~ '19.05.31	-
2019	50,000	150,000	_	'19.09.19	2차 '18.06.01 ~ '19.09.19	-

당해의 통계자료 등이 익년에 발간되고 당해의 모니터링 내용도 익년에 정리되어 발간되는 특성상, 이 사업의 집행시점은 예산 편성의 다음 해가 될 수 밖에 없는 반면, 예산 편성은 사업 승인이기도 하므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한계는 있다고 보여짐.

^{17) &#}x27;1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못하여 레포트를 발간하지 못했고, 이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15.10.)해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수년 간 사고이월이 반복 발생해 온 것은, 집행시점을 감안한 예산 편성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 편성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2년 사업으로 계획하여 1차년도는 최소한의 계약금액만 편성하고 2차년도에 대부분의 용역비를 편성하는 방법이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여 장기계속사업¹⁸⁾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과 관련자료의 축적 등은 서울연구원에 꼭 필요한 연구기초자료이기도 하므로 서울연구원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은 집단취락지구 실태 조사와 집단취 락지구 관리기준을 재정비코자 '18년 추경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총 용역비 3억원 중 1차년도 용역비 1억 3천만원 편성), 2회 유찰되어 지출원 인행위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19년 예산사업인 '개발제 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총 용역비 5억원 중 1차년도 용역비 3억원 편 성)과 통합하여 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음.

¹⁸⁾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으로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산이 확보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차계약)하고 이행하게 됨(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재원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액으로 입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매 회계 연도별로 예산편성 추진)

^{*}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구 분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총 용역비	310,000천원	458,470천원	755,820천원
21013 .11	310,000천원	300,000천원	610,000천원
'19년 예 산현액	'18년 사고이월(130,000천원)	19년 보였사	'19년 본예산
	('20년 / + '19년 본예산(180,000천원) '19년 본예산 ('20년 ' 간 12개월(2018~2019) 12개월(2019~2020) 18개월 의 개발제한구역 내 진단취라 기		('20년 145,820천원 예정)
과업기간	12개월(2018~2019)	12개월(2019~2020)	18개월(2019~2020)
과업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 149.13km² (취락지구 등 제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포함)
 과업내용	집단취락	개발제한	집단취락 + 개발제한
무합네공	[기글세인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현황
	- 집단취락 전수조사 - 집단취락자구 경계선 기준 등 검토 - 추가 지정 여부 검토 등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훼손지 복구, 시범시업 추진계획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굴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닥 현황 조사 -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추진현황			
방침수립	2018. 7.19.	2018.10.24.	2019. 2.21.
기술용역타 당성 심사	2018. 8. 6.	2018.10.31.	2019. 3.11
1차 공고	2018.11. 5.(유찰)	(통합 발주)	2019. 3.29.(1개 업체 등록)
2차 공고	2018.11.22.(유찰)	-	2019. 4.24.(2개 업체 등록)
우 선 협 상 대상자선정	_	_	2019. 5.21.
용역계약 및 착수(예정)	_	_	2019. 6월
비고	2회 유찰, 전액 사고이월	2019년 예산으로 집단취락용역과 통합발주로 계획변경됨	※ 통합발주 사유 : 집단취락(지구)는 全 지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통합발주 시 개발제한구역 일괄조사 및 종합분석이 가능하고, 관리계획의 일관성 확보 등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자료: 도시계획과)

시급성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사고이월한 것은, 추경 편성의 의미를 무색케 함은 물론, 현재 통합 추진 중인 '집단취락지구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용역'은 동일한 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위치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용역 계획이 가능했음을 감안해 보면, 이 사업은 면밀한 사업기획이 부족한 채 의욕만 앞세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으므로, 예산 편성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업·용역 기획이 필요하다 하겠음.

○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7년~'18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각각 '19년 3월, '19년 6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미준공되어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할 계획이고,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8년~'19년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가운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18년 1차용역은 올 2월에 준공되었고 '19년 2차용역을 현재 수행 중임.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18년 말 준공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및 올해 3월 발표된 도시·건축 혁신방안 (새로운 아파트경관 창출)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 수행 중인 여의도 관련 계획¹⁹⁾과의 정합성·연계성 확보와 부동산시장 향방 등을 감안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됨.

이 사업들은 용역 과정에서 정책 및 관련계획, 부동산시장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2년 용역이 결국 3년 용역이 된 경우로서 일부 불가피성은 이해되나, 정책·계획·시장의 변동성 만큼이나, 해당 아파트들의 노후도와 안전성 문제, 그리고, 재건축 추진현황 등도 중요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엄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토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¹⁹⁾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 한편, '18년에 준공된 용역의 공개 여부를 보면(붙임3), 전체 용역의 약 40%, 유지관리·전산개발 등 공개여부와 상관없는 용역(12건)을 제외하면 준공된 용역의 56%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주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정책·계획사항과 시민편익·자산 등의 긴밀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신중함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겠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용역이 수행되는 만큼, 용역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은 시민과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특정 용역 외에는 용역보고서 공개와 관련자료 공개를 당연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개	공개 예정	비공개	해당없음	Й
10건(27.0%)	1건(2.7%)	14건(37.8%)	12건(32.4%)	37건(100%)

셋째,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15 억 9천1백만원이며, 이는 도시계획국 예산현액 대비 3.9%임.
-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천8백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3억 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만원이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합 계 (불용률%)
계	218	-	1,303	70	-	1,591(3.9)
일반회계	218	-	1,175	70	-	1,463(4.2)
도시개발 특별회계	-	-	128	_	_	128(2.1)

○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공공시설정책토론 운영,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사업 등에 서 발생함.

(단위: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계)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80	-	55	14.5%	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안건상정 요청 감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60	-	11	18.3%	집행잔액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140	61	19	13.6%	낙찰차액
	공공시설정책토론 운영	9	ı	3	33.3%	연구회 및 포럼 참석대 상 미참석으로 인한 미 지급수당 및 급량비 집 행잔액 발생
일반회계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운영	68	-	7	10.3%	집행잔액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100	_	10	10.0%	낙찰차액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 설개선	629	-	127	20.2%	'14년 설계시 보다 등기구 가격 하락 (외국산-〉국산)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	_	218	54.5%	문화재청 돈덕전 복원사 업에 따른 사업구간 변 경 및 연기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400	-	62	15.5%	낙찰차액
도시개발 특별회계	성 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 상 수립	92	-	22	23.9%	당초 용역비에 편성되어 있던 자문비 및 대학교 기초자료 시 지급하고자 하였던 자료조사비를 자 문회의 미개최 및 자료 조사비 미집행에 따라 용역비가 변경되었음

○ 국고보조금 사업 중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7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에서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불용하였는데(불용률 약 55%),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은 돌담길의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돌담길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6년부터 '18년까지 조명을 개선해 온 가운데²⁰), '18년 사업구간이 당초 계획된 3구간 (정동분수대~미국대사관저)에서 세종대로19길(주한영국대사관 돌담길 연결로~세종대로)로 변경되면서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됨.



이는, 문화재청이 덕수궁 돈덕전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 돌담선형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3구간 사업을 돈덕전 복

20) 1~3 사업구간(1·2구간 사업 완료, 3구간은 돈덕전 복원사업 완료 후로 연기)



원사업 이후('21년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안전총괄실에서 요청한 사업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으로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구간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변경된 사업구간이 돌담길 연결로 설치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조성 등과 연계되어 경관조명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의 계획 변경과 이로 인한 불용은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일	rienrien@seoul.go.kr

※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3건)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실국 (부서명)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부실한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설정하여성인지 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목적 달성을 구체적으로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함.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평가에 기초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할 것임.	 ▶ 완료 ○ 2030서울플랜은 우리시 최 상위 법정계획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시정 전반에 걸쳐 핵 심이슈 5개분야 17개 목표, 60개 전략 추진 과정의 성과 와 도시여건변화를 진단하는 사업으로서 -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지표 설정 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성다수로 설정하였으나, ○ 추후 모니터링 예산편성시 성 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 설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	예비비 지출 시의회 미보고	예비비 지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기별 보고를이행하여 시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권고함.	 ▶ 완료 ○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간접 강제 집행정지 소송의 공탁금 으로 지출하였으며, 1심 승소 로 회기내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보고 하였으나 상 대측의 항소로 지연된 사항임 ○ 향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 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 내 보고토록 하겠음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4	추경편성 사업비 전액 사고이월 발 생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	▶ 진행 중○ 「집단취막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용역은 집단취막지구 실태조사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실국 (부서명)
		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함. 정책조사연구 용역사업의 경우시의성과함께 산출물의 정책적 타당성 또는 공정성이 매우중요한 바 추경편성 뒤 전액이월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할 것임. 다만, 2019년 용역발주예정인 개발제한구역종합관리방안과통합발주를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행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대한일괄현황조사및종합분석이가능하게된점,관리방안의일관성확보등효율적업무추진을확보한점등은필요하고 적절한 사업변경으로사료됨	구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 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이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 급공고(2회) 등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부득불 사고이월됨 이 2019년 사업계획 변경 및 재 공고를 통해 현재 용역평기위원회	

〈붙임1〉회계별 집행현황 (자료: 도시계획과)

□ 일반회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C)	계	명시	사고	집행잔액 E =	불용률 (E/A)	불용사유 (30%이상)
	(A)	(B)		(D)	이월	이월	(A-C-D)	(=, , , ,	(00)0-10)
합계	34,699	32,127	30,494	2,742	980	1,762	1,463	4.2	
도시계획과	6,175	5,218	4,172	1,746	570	1,176	257	4.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80	325	325	_	-	-	55	14.5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60	49	49	-	-	-	11	18.3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140	121	60	61	_	61	19	13.6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238	237	137	100		100	1	0.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187	179	179	-	-	-	8	4.3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	(×200) 800	730	(×200) 317	413	-	413	70	8.8	
용도지역 재정비	259	259	-	259	_	259	-	_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	113	113	113	-	_	_	-	_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420	215	215	190	190	-	15	3.6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100	97	97	-	-	-	3	3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300	289	289	-	_	-	11	3.7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구상	299	299	299	-	-	-	-	_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150	142	142	-	-	-	8	5.3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150	141	-	141	-	141	9	6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250	250	250	_	-	-	-	_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148	142	71	71		71	6	4.1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186	186	186	-	-	_	-	-	

	예산	지출원인		다음	연도 이	원애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현액 (A)	해위액 (B)	지출액 (C)	ー 月 (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E = (A-C-D)	불용률 (E/A)	불용사유 (30%이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182	182	182	-	-	-	-	-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 수립	랜 172	172	172	_	_	_	-	_	
역세권기능 재정립 및 활성 실현방안 연구	화 188	188	188	-	-	-	-	_	
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 관리계획 수립	58	56	56	-	-	-	2	3.4	
일원동 대청마을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수렴	<u>u</u> 53	53	53	-	_	_	-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구성	당 380	-	_	380	380	_	-	-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편	년 100	94	94	_	_	_	6	6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을 300	300	300	_	_	_	-	_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130	- (유찰)	-	130		130	-	_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100	100	100	_	_	_	-	_	
기본경비	333	299	299	_	-	-	34	10.2	
도시관리과	7,658	6,978	6,857	531	410	121	271	3.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127	125	125	-	-	_	1	0.8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신	1 6,296	5,617	5,495	531	410	121	270	4.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480	480	480	_	_	_	_	_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 일괄 재정비	획 400	400	400	-	-	_	-	_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00	300	300	-	-	_	-	-	
서울 GREEN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	-	-	_	-	-	-	-	
기본경비	56	56	56	_	-	_	1	_	

	예산	지출원인	TI츠애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현액 (A)	행위액 (B)	지출액 (C)	기 (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E = (A-C-D)	불용률 (E/A)	불용사유 (30%이상)	
					이결					
시설계획과	13,167	12,760	12,293	466	_	466	408	3.1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36	34	34	_	-	-	2	5.6		
공공시설 정책토론 운영	9	6	6	-	-	_	3	30.7	연구회 및 포럼 전 문가 참석수당 및 급리 집행진액 발 생	
양재우면 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130	128	128	_	-	-	1	0		
글로벌 신성장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마련	275	262	131	131	_	131	13	4.7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192	181	73	109	-	109	11	5.7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240	227	-	227	_	227	14	5.8		
도로계획시설 관련 소송	200	200	200	_	_	I	-	0		
캠퍼스타운 협의회 운영	68	61	61	-	-	-	7	10.3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2,193	2,175	2,175	-	-	-	17	0.8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100	90	90	-	_	ı	10	10		
캠퍼스타운 조성확대(1단계)	9,060	8,751	8,751	-	_	1	309	3.4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600	580	580	_	_	_	20	3.3		
기본경비	64	64	64	-	_	-	-	0		
토지관리과	1,286	1,266	1,266	-	-	-	19	1.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70	70	70	-	-	-	-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191	182	182	-	-	-	9	4.7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현	280	275	275	-	-	ı	5	1.8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59	54	54	-	-	_	5	8.5		

	예산	지출원인	지출액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현액 (A)	행위액 (B)	시술액 (C)	계 (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E = (A-C-D)	불용률 (E/A)	불용사유 (30%이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29	29	29	-	_	-	-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홈 페이지) 유지관리	7	7	7	-	_	-	-	-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8	18	18	_	_	-	-	-	
지적관리	19	19	19	_	-	-	-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60	60	60	-	-	-	-	-	
지가조사	488	488	488	_	_	-	-	-	
기본경비	64	64	64	-	-	-	-	_	
국고보조금 반납	1	1	1	_	_	-	_	-	
도시빛정책과	6,413	5,905	5,905	_	_	-	508	7.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0	502	502	-	-	-	127	20.2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1,940	1,928	1,928	_	-	-	12	0.6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108	98	98	_	-	-	10	9.3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04	103	103	-	-	ı	2	1.9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0	804	804	_	_	ı	6	0.7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	182	182	-	-	-	218	54.5	문화재청 돈닥전 복 원사업에 따른 사업 구간 변경 및 연기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62	62	62	-	-	-	-	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용역	92	92	92	-	-	-	-	0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57	1,195	1,195	_	-	1	62	4.9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00	100	100	_	_	-	-	0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100	100	100	_	_		_	0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70	67	67	_	_		3	4.3	
옥외조명 싱된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40	38	38	-	-	-	2	5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	200	200	200	-	-	_	-	0	

(단위 : 백만원)

	예산	지출원인	TI ᄎ애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ㅂㅇㄹ	80110
세부사업	현액 (A)	행위액 (B)	지출액 (C)	계 (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E = (A-C-D)	불용률 (E/A)	불용사유 (30%이상)
(시민참여)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10	10	10	_	_	_	_	0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4	4	4	-	-	-	-	0	
선유로 경관조명 개선	50	50	50	_	ı	ı	-	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400	337	337	_	1	_	63	15.8	
기본경비	37	34	34	-	-	_	3	8.1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현황

		예산	지출원인	TI ᄎ ()i	다음	연도 이	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HOIIO
	세부사업	현액 (A)	행위액 (B)	지출액 (C)	계 (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E = (A-C-D)	(E/A)	불용사유 (30%이상)
힡	계	5,872	5,738	4,832	912	_	912	127	2.1	
5	시관리과	5,656	5,544	4,638	912	-	912	105	1.9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3,320	3,320	3,320	=	-	-	-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93	93	93	-	-	-	1	-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203	198	198	=	-	-	5	2.5	
	목동·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410	382	382	-	-	-	28	6.8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50	237	89	148	-	148	13	5.2	
	오류동 동부제강부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167	156	39	123	-	123	5	3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758	708	379	330	-	330	50	6.6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55	450	138	312	-	312	5	1.1	
٨	설계획과	216	194	194	_	_	_	22	10.2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25	125	125	-	-	-	-	-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92	69	69	ı	_	-	22	23.9	

〈붙임2〉2018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대상별 결산현황 (자료: 도시관리과)

(단위 : 천원)

				이월액			()	귀 · 선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추진현황
총계	1,574,000	6,295,565	5,495,488 (87.3%)	530,569 (8.4%)	410,000	120,569	269,508 (4.3%)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469,809	460,504 (98.0%)	0			9,305 (2.0%)	'18.07. 공사준공
성동구 성수동 상원길		563,851	548,133 (97.2%)	0			15,718 (2.8%)	'18.11. 공사준공
중랑구 망우동 맛솜씨길		451,910	451,129 (99.8%)	0			781 (0.2%)	'18.11. 공사준공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주변		500,000	205,069 (41.0%)	101,669 (20.3%)		101,669	193,262 (38.7%)	'19.04. 공사준공
중랑구 상봉동 상봉중앙로		478,353	478,353 (100%)	0			0	'18.10. 공사준공
도봉구 도봉2동 도봉역 주변		477,975	477,975 (100%)	0			0	'18.12. 공사준공
도봉구 창3동		221,020	221,020 (100%)	0			0	'18.09. 공사준공
강서구 화곡1동 등		603,567	601,945 (99.7%)	0			1,622 (0.3%)	'18.06 공사준공
강서구 개화동 등		520,866	513,466 (98.6%)	0			7,400 (1.4%)	'18.10. 공사준공
영등포구 양평동		174,407	173,806 (99.7%)	0			601 (0.3%)	'18.10. 공사준공
영등포구 문래동		259,807	258,870 (99.6%)	0			937 (0.4%)	'18.10. 공사준공
종로구 적선동 경복궁역 앞	20,000	20,000	19,780 (98.9%)	0			220 (1.1%)	'18.10. 용역완수
성동구 옥수동 달맞이공원	15,000	15,000	15,000 (100%)	0			0	'18.11. 용역완수
도봉구 방학동 방학천 주변	500,000	500,000	493,700 (98.7%)	0			6,300 (1.3%)	'18.12. 공사준공
양천구 신정동 차량기지 주변	30,000	30,000	24,816 (82.7%)	0			5,184 (17.3%)	'18.11. 용역완수
금천구 독산1동	35,000	35,000	27,579 (78.8%)	0			7,421 (21.2%)	'18.12. 용역완수
서초구 양재동 동산로	500,000	500,000	488,016 (97.6%)	0			11,984 (2.4%)	'18.10. 공사준공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2호선 주변 건축물	450,000	450,000	17,381 (3.9%)	428,900 (95.3%)	410,000	18,900	3,719 (0.8%)	'19.12. 준공(예정)
사무관리비 등	24,000	24,000	18,946 (78.9%)	0			5,054 (21.1%)	

〈붙임3〉 '18년 준공된 용역 관련 (자료: 도시계획과)

					9 M		
연 번	부서 명	용역명	용역비	용역 기간	용역 (보고서) 공개여부	접근경로 (URL)	비공개사유
1	도시 계획과	노량진 일대 종합발 전계획수립용역	472,000	'16.4.20.~ '18.2.28.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2	도시 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378,500	'16.4.15.~ '18.2.28.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3	도시 계획과	SETEC일대 종합관 리방안 수립 용역	225,000	'17.7.26.~ '18.5.25.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4	도시 계획과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365,900	'16.3.25.~ '18.10.24.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5	도시 계획과	2030 서울도시기본 계획 상시모니터링 용역	137,443	'17.6.5.~ '18.11.15.	공개(예정)		
6	도시 계획과	서울-평양간 도시계 획분야 도시교류 기 초연구용역	811,100	'15.7.13.~ '18.12.31.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공개 (국가안전보장)
7	도시 계획과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68,428	'16.3.16.~ '18.12.31.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8	도시 계획과	2018년 UPIS 및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유지관리용역	178,536	'18.1.3.~ '18.12.31.	공개	http://opengo v.seoul.go.kr/	
9	도시 계획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 른 도시계획체계 재 정립 방안 연구용역	142,116	'18.3.30.~ '18.12.31.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10	도시 계획과	용산 광역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 수립 용역	428,000	'17.3.20.~ '18.12.31.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11	전략 계획과	2018 용산전 유지 관리 용역	24,652	'18.1.1.~ '18.5.6.	해당사항없음		
12	전략 계획과	서울시-주한미군 공 동전시회 전시연출 용역	52,640	'18.11.13. ~ '18.11.28.	해당사항없음		

				1			
13	전략 계획과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편 용역	94,000	'18.5.10.~ '18.12.17.	해당사항없음		
14	도시 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 역	436,957	'16.5.18.~ '18.6.17.	비공개		자치구 및 관계부서 협의 등 검토 중
15	도시 관리과	국회대로 주변 지구 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 역	39,923	'17.3.24.~ '18.12.31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 후 공개 예정
16	도시 관리과	국회대로 주변 지구 단위계획 수립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88,657	'17.3.28.~ '18.12.31.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 후 공개 예정
17	도시 관리과	국회대로 주변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577,170	'16.5.12.~ '18.12.31.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 후 공개 예정
18	시설 계획과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계획 수 립 용역	449,900	'16.5.19.~ '18.6.18.	공개	http://urban. seoul.go.kr/4 DUPIS/sub7/s ub7_4.jsp#vie w/288186	
19	시설 계획과	양재우면 R&CD활 성화를 위한 선도사 업 실행방안 수립 용 역	258,000	'17.4.26.~ '18.6.29.	공개	http://urban. seoul.go.kr/4 DUPIS/sub7/s ub7_4.jsp#vie w/288864	
20	시설 계획과	서울형 캠퍼스타운 종합형 광운대·세종 대·중앙대 실행계획 수립 용역	580,000	'18.4.13.~ '18.12.22.	공개	http://urban. seoul.go.kr/4 DUPIS/sub7/s ub7_4.jsp#vie w/288933	
21	시설 계획과	대학과 도시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용역	320,000	'17.5.31.~ '18.12.17.	공개	http://urban. seoul.go.kr/4 DUPIS/sub7/s ub7_4.jsp#vie w/288889	
22	토지 관리과	실거래가격 반영을 위한 공시가격 개선 조사용역	15,567	'18.9.5.~ '18.12.4.	공개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 요청시 제공	
23	토지 관리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10,233	'18.1.1.~ '18.12.31.	해당없음		
24	토지 관리과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시 스템 유지관리용역	34,440	'18.1.1.~ '18.12.31.	해당없음		
25	토지 관리과	부동산정보포털시스 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1,999	'18.1.1.~ '18.12.31.	해당없음		

26	토지 관리과	수용재결통합관리시 스템(홈페이지)유지 관리	6,899	'18.1.1.~ '18.12.31.	해당없음		
27	토지 관리과	부동산정보포털시스 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 용역	275,000	'18.4.27.~ '18.12.27.	해당없음		
28	도시빛 정책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용 역	14,000	'18.3.15.~ '18.4.14.	해당없음		
29	도시빛 정책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에 대한 지정대상 및 관리완화기준 마련	15,400	'18.3.15.~ '18.6.13.	공개	http://urban. seoul.go.kr	
30	도시빛 정책과	서울시 도시빛 기본 계획 수립	233,000	'17.6.23.~ '18.7.31.	공개	http://urban. seoul.go.kr	
31	도시빛 정책과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수립 용역	38,000	'18.4.27.~ '18.10.27.	공개	http://urban. seoul.go.kr	
32	도시빛 정책과	2018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행사운 영	75,680	'18.4.11.~ '18.9.30.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개인정보)
33	도시빛 정책과	2018년 서울좋은간 판 홈페이지 유지관 리 용역	15,551	'18.2.20.~ '18.12.31.	해당없음		
34	도시빛 정책과	2018년 서울시 좋 은간판 공모전 운영 용역	16,000	'18.4.13.~ '18.12.31.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개인정보)
35	도시빛 정책과	미디어파사드 시설기 준 수립	67,000	'18.6.20.~ '18.12.19.	공개	http://urban. seoul.go.kr	
36	도시빛 정책과	2018년 서울시 강 북권역 불법유동광고 물 기동정비용역	221,387	'18.2.28.~ '18.12.28.	해당없음		
37	도시빛 정책과	2018년 서울시 강 남권역 불법유동광고 물 기동정비용역	190,178	'18.3.2.~ '18.12.28.	해당없음		